

의안번호	제 8 호
의결년월일	1998. 8. 24
의결사항	권안가결

발 의 자	이익규의원외 3인
제출년월일	1998. 8. 2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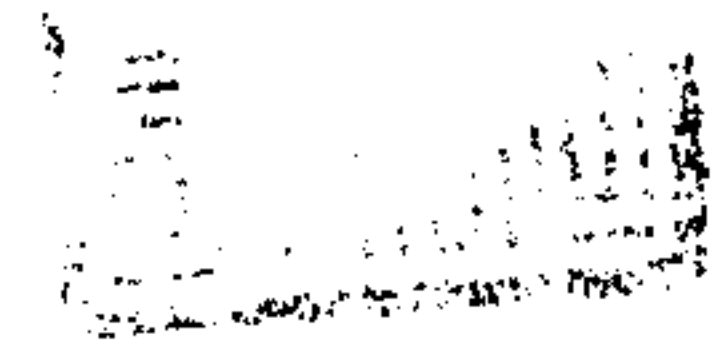
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의건

수신 의장

제목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의견

위건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
발의 합니다.

붙임 안건 1부. 끝



발의자 :  (인)
(찬성의원서명 : 붙임참조)

□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'98. 8. 12 국지성 집중호우로 보은군 전역에 주택파손 및 농경지 유실 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군민 모두가 피해자로서 실의에 잠겨있는 바, 피해주민의 위로는 물론 조속하고 원활한 응급복구와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차원에서의 다각적인 조사활동으로 수해복구의 실태 및 방향을 제시하여 항구적인 수해대책을 마련토록 하기 위함이며

I. 추진방향으로

- 피해우심지역 중점 조사
- 피해조사, 구호및복구, 재해대책 대응, 제도개선 및 정책분야 등으로 조사.
- 현장조사 위주 및 주민의견 수렴
-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활동하되 부득이한 경우 자료요청하여 집행부의 수해복구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함

II. 세부추진계획으로는

1. 운영기간 : '98. 8. 25 ~ 수해복구 종료시까지(상설운영)

※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운영 중지함.

2. 특별위원회 구성

가. 구성

- 위원장 : 우쾌명
- 간 사 : 이익규
- 위 원 : 의장을 제외한 10명의원으로 구성

나. 기능

- ① 피해주민 위로와 정확한 피해조사 여부확인
- ② 신속한 응급복구 추진과 의회차원 협조
- ③ 항구적인 수해복구 방향제시
- ④ 수해 상습지역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
- ⑤ 제도개선 및 정부차원 대책 논의
- ⑥ 주민의견 청취 반영

3. 활동지역 : 관내 전지역을 조사하되(우심지역 중점조사)

4. 중점조사사항은

가. 피해조사분야

- 주택파손 정도
- 농경지매몰 및 유실정도
- 하천 및 제방 붕괴
- 세천 및 소규모 시설
- 도로 및 교량
- 수리시설
- 상하수도
- 기타 피해시설물

나. 구호 및 복구분야

- 이재민관리 및 구호품 지급 실태
- 응급복구 추진 실태
- 항구적인 복구대책 및 사전준비 실태
- 수해잔재물 정리 실태

다. 재해대책 대응분야

- 재해발생 초동단계 대응체제 및 공무원 비상체제 운영상황
- 재해대책 본부 운영
- 인력 및 장비 비축물자 수불실태
- 유관기관·사회단체 등 협조 대응체제

라. 제도개선 및 정책분야

- 재해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
-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, 농업융자금 상환연기
- 복구방향(원상복구, 개량복구) 제도개선
- 피해조사 보고시한 개선 등
- 보은군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개선(주택 → 농지전용문제등)

5. 조사요령을 말씀드리면

- 읍면 및 수해우심지역을 선정하여 마을별 읍면별로 별지 조사표에 의거 작성
- 조사시 읍면에서 작성된 재해대장 참조하여 현지주민 의견청취
- 조사시 지참사항 : 줄자, 카메라
※문제지역은 반드시 사진촬영하여 근거 확보
- 조사기간동안(7일간)에는 조사위원 여비지급

6. 추진일정

-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의결: 제75회 임시회('98. 8. 25)
- 피해조사 : '98. 8. 25 ~ 9. 1(일요일 제외 7일간)
- 서류정리 : 9. 2 ~ 9. 6(5일간)
- 9. 6이후 수해복구 종료시까지 :
 - 제도개선 건의 및 대안자료 준비
 - 수해복구 추진상황 점검

※필요시 집행기관 의견청취

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의안작성위원회 서명

[illegible]

일자별 현지조사 일정

날 짜	1조	2조	3조
8월26일	수한	외속	산외
27일	수한	외속	내북
28일	보은	마로	회북
29일	보은	마로	회남
30일			
31일	내속	탄부	
9월1일		삼승	

※ 당일 10시 읍면장 대기, 조사결과 수해피해총괄표 준비요